#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3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이수진・김문수・민병덕

박희승 • 김준혁 • 이성윤

박해철 · 김정호 · 송옥주

민형배 • 서영교 • 정준호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, 보육시설을 이용 하지 않는 경우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장애영유아의 경우 해당 영유아에 적합한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원인 등으로 부득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.

이에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방 문보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고자 함. 한편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 정으로 명확히 하여 그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22조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1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제2항·제3항·제4항을 각각 제3항·제4항·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유치원"을 "유치원, 제2항에 따른 가정방문보육"으로, "지급할 수 있다."를 "지급하여야 한다.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유아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해당 장애영유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6호의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에 따른 가정방문보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보육지원) ① (생 략)	제22조(보육지원) ① (현행과 같
<신 설>	음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영유아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
	따른 유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해당 장애영유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6호의 가
	정방문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	<u>3</u>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	
른 어린이집 또는 「유아교육	
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u>유치원</u>	유치원,
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	제2항에 따른 가정방문보육
아에게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	
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<u>지급</u>	
<u>할 수 있다.</u>	<u>지급하여야</u>
	<u>한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신 설>	⑤ 제2항에 따른 가정방문보육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④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 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.

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
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교사
를 배치하여야 한다.
<u>⑥</u> 제4항
·.